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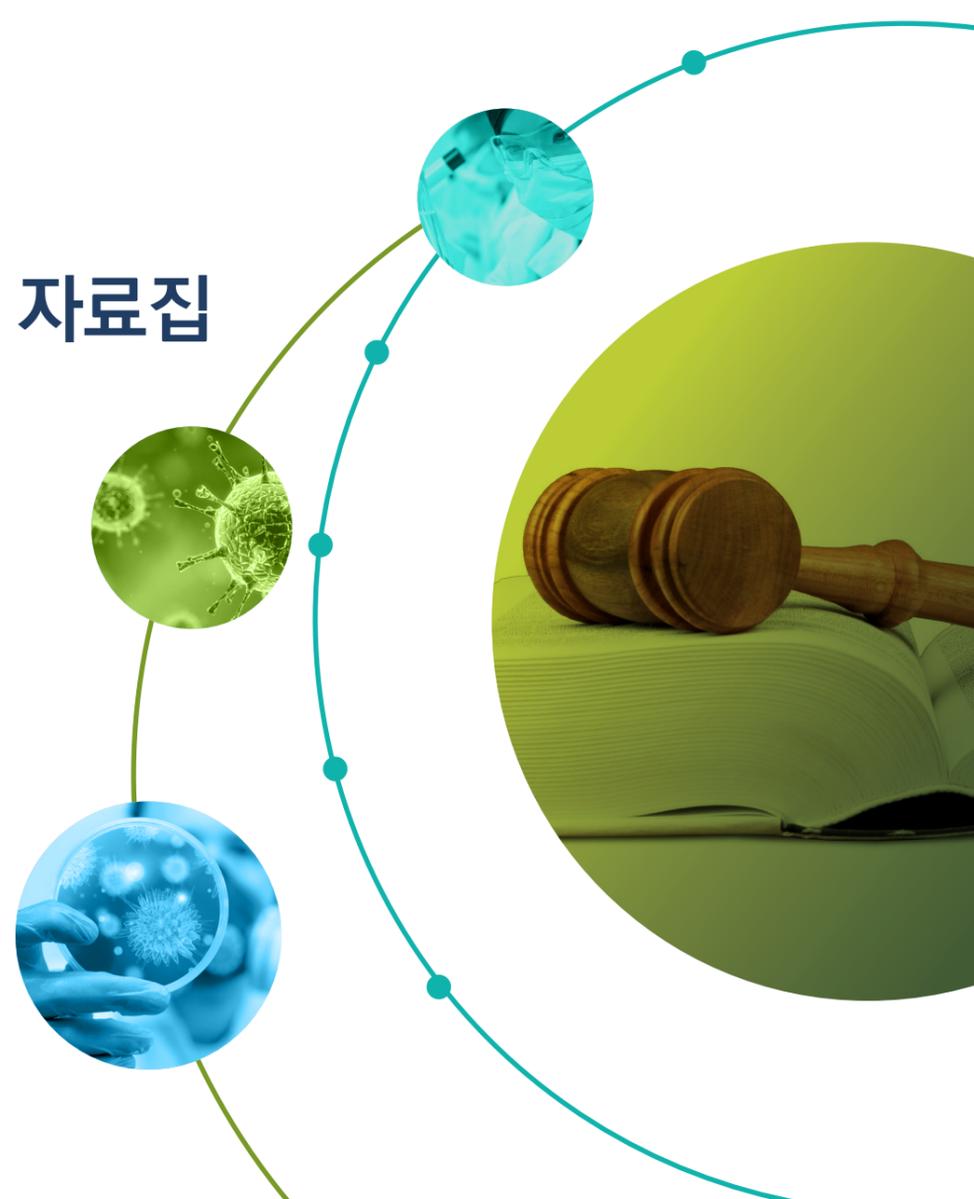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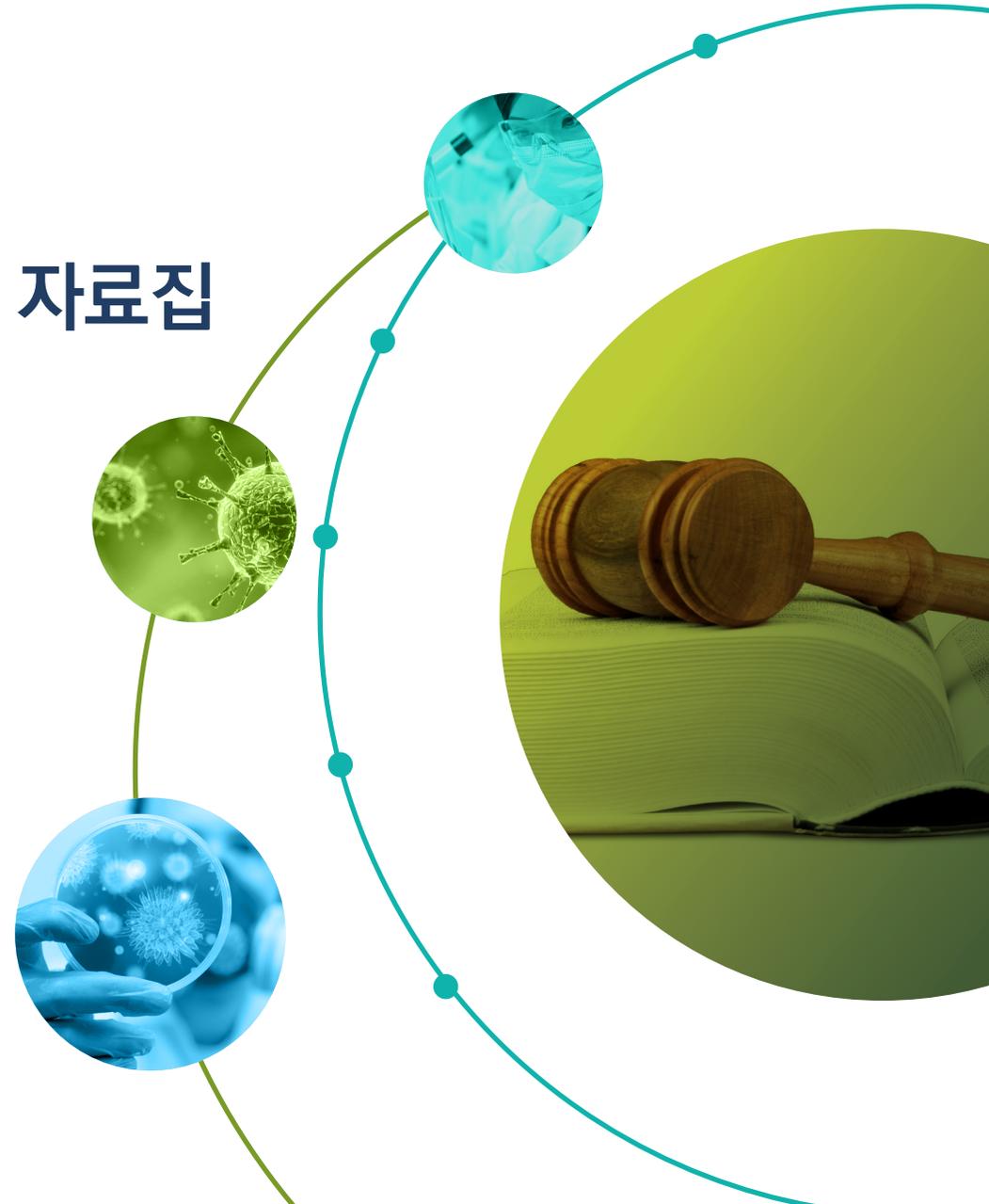
한국바이오협회 | 바이오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자료집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자료집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자료집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자료집

2018. 11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바이오협회

목 차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별표 …… 61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서식 …… 75
-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개요 …………… 101
-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전문(국·영문) …………… 107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9	제1조(목적) 9	제1조(목적) 9
제2조(정의) 10	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 10	
제3조 삭제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14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		
제4조의2(화학무기·생물무기 금지 의무) 14		
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15	제6조(제조허가) 15	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15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 17	제6조의2(제조신고) 17	제2조의2(제조신고 등) 17
제6조(결격사유) 17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19		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19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19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19	제2조의4(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19
제7조(지위승계) 20		제3조(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20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21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24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26 제10조(폐기) 27		제4조(제조 폐지신고) 26 제5조(양도의 승인 신청) 27 제5조의2(양도신고) 27 제6조(폐기신고) 28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제11조(수출규제) 28 제12조(수입규제) 29	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28 제7조의2(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29 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 신고) 31	제7조(수입허가 신청) 29 제8조(수출입물품 인도·인수 신고) 31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보유량 등의 신고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32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33	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32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33	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32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33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3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35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35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36		
제18조(행정감독) 37	제10조(행정감독) 37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8	제10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38	제9조의3(정기검사증명서) 38
	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39	
	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39	
제6장 보 칙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39	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39	
	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40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41	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41	
제20조(비밀보호) 41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42	제12조(장부의 비치 등) 42	
	제12조의2(자료 제출) 43	
제22조(청문) 43	제13조 삭제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43	제14조(업무의 위탁) 43	제10조(업무의 위탁기관) 43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44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7장 벌 칙		
제25조(벌칙)	45	
제26조(벌칙)	45	
제27조(벌칙)	46	
제28조(벌칙)	46	
제29조(양벌규정)	47	
제30조(과태료)	48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48
부칙	49	부칙
별표	별표	서식
[별표] 특정화학물질(제2조제5호관련)	63	75
	[별표 1] 생물작용제(제2조제3항 관련)	[서식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 신청서
	[별표 2] 독소(제2조제4항 관련)	[서식 2] 1종화학물질 제조(변경허가 신청서, 허가
	[별표 3] 화학물질별 신고 대상 등(제9조 관련) ..	사항 변경신고서)
	[별표 4] 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	[서식 3]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제9조의2제1항 단서 관련)	[서식 4]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서식 5]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
		[서식 6]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 확인증 ..
		[서식 7]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서식 8]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사,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사)지위승계 신고서
		[서식 9]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제조 폐지
		신고서
		87

편 류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서식 10]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 88 [서식 11]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 89 [서식 12]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 90 [서식 13]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확인증 91 [서식 14]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폐기 신고서 92 [서식 15]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수입허가, 변경허가)]신청서 93 [서식 16]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수입 허가서 95 [서식 17]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 96 [서식 18] 제조량 등의(실적, 계획)신고서 97 [서식 19]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 98 [서식 20] 정기검사증명서 99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제정 1996. 8.16. 법률 제 5162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3호 개정 1997.12.13. 법률 제 5454호 개정 2004.12.31. 법률 제 7292호 개정 2006. 4.28. 법률 제 7948호 개정 2007. 4.11. 법률 제 8356호 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개정 2008.12.26. 법률 제 9253호 개정 2009. 3.18. 법률 제 9505호 개정 2010. 1.18. 법률 제 9932호 개정 2011. 4.14. 법률 제10592호 개정 2013. 3.23. 법률 제11690호 개정 2013. 6. 4. 법률 제11862호 개정 2014. 1.21. 법률 제12317호 개정 2017.10.31. 법률 제15001호	제정 1997. 5.19. 대통령령 제15373호 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개정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호 개정 2004. 3.17. 대통령령 제18312호 개정 2006. 6.12. 대통령령 제19513호 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9호 개정 2007. 4. 4. 대통령령 제19986호 개정 2007. 9.10. 대통령령 제20257호 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8호 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개정 2010. 7.12. 대통령령 제22269호 개정 2010.12.29. 대통령령 제22564호 개정 2011. 4. 5. 대통령령 제22863호 개정 2012. 2.22. 대통령령 제23627호 개정 2013. 3.23. 대통령령 제24442호 개정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4호	제정 1997 .6.21. 통상산업부령 제58호 개정 2005. 2. 2. 통상산업부령 제254호 개정 2006.10. 4. 산업자원부령 제369호 개정 2006.12.29. 산업자원부령 제381호 개정 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 개정 2012. 4.13. 지식경제부령 제246호 개정 2013. 3.2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개정 2014.12.24. 환경부령 제583호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 칙 <개정 2011.4.14.></p> <p>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p>	<p>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2.2.22.]</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2.4.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화학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독성화학물질 및 그 원료물질. 다만,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가목에 규정된 독성화학물질의 독성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상해(傷害)를 일으키도록 특별히 설계된 탄약 및 장치</p> <p>다. 나목에 규정된 탄약 및 장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비 및 운반 수단</p> <p>2. “화학무기금지협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목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말한다.</p>	<p>제2조(단일유기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및 독소) ①</p> <p>「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제외한 유기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탄화수소 2. 화약류 3. 탄소의 산화물 4. 탄소의 황화물 5. 금속성 탄산염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유기화학물질의 상품명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등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가. 공업·농업·의료·제약·연구 또는 그 밖의 평화적 목적</p> <p>나. 독성화학물질과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p> <p>다. 화학무기의 사용과 관련되지 아니하고 전투수단으로 화학물질의 독성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군사적 목적</p> <p>라. 폭동 진압에 관한 법령의 집행 목적. 이 경우 폭동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은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로서 급속하게 인체의 감각기관에 자극을 주거나 신체의 무력화를 일으켰다가 짧은 시간 내에 그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한정한다.</p> <p>3. “독성화학물질”이란 생명체에 대한 화학작용을 통하여 인간 또는 동물에게 사망,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p> <p>4. “원료물질”이란 독성화학물질의 제조단계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p> <p>5. “특정화학물질”이란 화학무기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의 1종·2종 및 3종 화학</p>	<p>질”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p> <p>④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2.2.22.]</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물질을 말한다.</p> <p>6. “단일유기화학물질”이란 화학명, 구조식(構造式) 및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모든 화학합성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생물무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 다만, 질병의 예방과 치료, 그 밖의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나. 가목에 규정된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충전과 사용을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장비와 운반수단</p> <p>8.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져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枯死),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p> <p>9. “독소”란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중 인간이나 동식물에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나 영구적 상해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p> <p>10. “제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는 것을 말한다.</p> <p>가. 화학물질을 그 사용 목적에 따라 화학반응 시킴으로써 다른 화학물질을 생성(일시적 생성을 포함한다)하는 것</p> <p>나.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배양·추출·합성하거나 독소를 생성하는 생물체 또는 생물작용제의 유전자를 변형하는 것</p> <p>11. “가공”이란 하나의 화학물질이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조제(調製)·추출 또는 정제(精製) 등의 물리적 공정(工程)을 말한다.</p> <p>12. “소비”란 화학물질의 사용 결과 화학반응을 통하여 본래의 화학물질과는 다른 화학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p> <p>13. “국제기구”란 화학무기금지협약 제8조에 따라 설립되는 화학무기금지기구를 말한다.</p> <p>14. “국제사찰”이란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기구의 기술사무국이 시행하는 사찰(査察)을 말한다.</p> <p>15. “시설협정”이란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간에 국제사찰대상시설에 적용될 사찰에 관하여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조 삭제 <2006.4.28.></p> <p>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p> <p>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 <신설 2006.4.28.></p> <p>제4조의2(화학무기·생물무기 금지 의무) ①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4.14.]</p>	<p>제3조 삭제 <2012.2.22.></p> <p>제4조 삭제 <2012.2.22.></p> <p>제5조 삭제 <2012.2.22.></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장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개정 2011.4.14.></p> <p>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 목적, 제조시설과 제조량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허가 대상 1종화학물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에 해당하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4.></p> <p>③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자”라 한다)는 해당 1종화학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유해성평가를 마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4.></p> <p>[전문개정 2011.4.14.]</p>	<p>제6조(제조허가)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미 제조를 허가한 총수량과 제11조제2항에 따라 인정한 총수량에 허가하려는 제조수량을 합산한 수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조 또는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의료·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조할 것 2. 각 반응기(反應器)의 용적(容積)이 100리터 이하이고, 5리터를 초과하는 각 반응기의 용적의 합이 500리터 이하이며, 연속가동 방식이 아닌 제조시설에서 제조할 것 <p>[전문개정 2012.2.22.]</p>	<p>제2조(제조허가 신청 등)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4. 물질의 제조공정 설명서 5. 물질의 제조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6. 물질의 보관방법 설명서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당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법 제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3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이하 “제조허가증”이라 한다)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p>④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상호 또는 대표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p>⑤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제조사”라 한다)의</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p> <p>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p>	<p>제6조의2(제조신고)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인간이나 동식물의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검사를 목적으로 생물작용제등을 분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p> <p>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분리를 신고한 자</p>	<p>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 변경 신고서에 제조허가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조허가증을 해당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13.]</p> <p>제2조의2(제조신고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의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에 따라 제조허가가 취소된 날이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p>[전문개정 2011.4.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 또는 그 이동을 신고한 자 <p>[전문개정 2012.2.22.]</p>	<p>치를 나타내는 도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5.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설명서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지 제6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이하 “제조신고 확인증”이라 한다)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제조사”라 한다)에게 생물작용제등의 보안 유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설정 등을 포함하는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작성 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4.14.]</p> <p>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절차와 그 밖</p>	<p>제6조의3(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신고제조사에게는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조(변경)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4.13.]</p> <p>제2조의3(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이하 “보안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 2. 생물작용제등의 보관시설 및 운반에 관한 사항 3.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4. 외부출입자의 확인 등 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p>[본조신설 2006.12.29.]</p> <p>제2조의4(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p> <p>① 영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p> <p>제7조(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가 그 사업을 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관리계획의 작성방법 2.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 <p>②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제조자를 지원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를 경영책임자가 확약(確約)할 것 2. 보안관리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영책임자가 확약할 것 <p>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고제조자는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p>	<p>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신고 확인증 3.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確約書) 4.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약서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13.]</p> <p>제3조(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p> <p>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허가제조사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허가제조사 지위승계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신고제조사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도한 경우 그 양수인</p> <p>3. 법인인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p> <p>②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4.14.]</p> <p>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p>		<p>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사유가 합병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4.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18호 또는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항 후단 및 단서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8.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을 폐기한 경우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10.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1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13.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14.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15.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16.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7.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18.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 19.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허가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이나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허가제조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인이 제6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4.14.]</p> <p>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제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정지명령”이라 한다)하거나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이하 이 항에서 “제조폐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폐쇄</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경우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3.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7. 제10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같은 항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p> <p>1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12.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p> <p>13.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p> <p>14.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p> <p>15.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p> <p>16. 제조정지기간에 제조행위를 한 경우</p> <p>17. 최근 1년간 2회의 제조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p> <p>② 신고제조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p> <p>제9조(제조외 폐지신고)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가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p>		<p>제4조(제조외 폐지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 제5조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나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제10조(폐기) ① 허가제조자나 신고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3개월 이내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폐기 대상은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는 1종화학물질로 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8조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받거나 제8조의2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폐지의 신고를 한 경우 허가받은 제조수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여야 하는 자(이하 “폐기의무자”라 한다)는 폐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미 제조한 1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p>		<p>폐지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제조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허가증 또는 제조신고 확인증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p>[전문개정 2012.4.13.]</p> <p>제5조(양도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수인이 허가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4.13.]</p> <p>제5조의2(양도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의 승인을 받아 다른 허가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미 제조한 생물작용제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른 신고제조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③ 폐기의무자는 폐기하여야 할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종류와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적절한 폐기방법을 폐기의무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방법에 관하여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4.14.]</p> <p>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개정 2011.4.14.></p> <p>제11조(수출규제) ①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p>	<p>제7조(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p>	<p>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수인이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양도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 양도신고 확인증을 해당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4.13.]</p> <p>제6조(폐기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폐기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폐기신고서에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4.13.]</p>

법 른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등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목적과 수출 대상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해당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에 대하여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도(引導)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도하려면 수출 목적과 수출량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허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4.14.]</p> <p>제12조(수입규제)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과 수입국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p>	<p>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2.22.]</p> <p>제7조의2(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①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제7조(수입허가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1종 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인수(引受)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종화학물질을 인수하려면 수입 목적과 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 40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2종화학물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화학무기금지협약 당사국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p> <p>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물작용제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p>	<p>1. 연구·의료·제약의 목적 또는 독성화학물질 및 화학무기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입할 것</p> <p>2. 수입국은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화학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일 것(1종화학물질의 경우만 해당한다)</p> <p>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삭제 <2018.4.3> [전문개정 2012.2.22.]</p>	<p>별지 제15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2.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발주서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수입허가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2.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병해충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고위험병원체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p> <p>[전문개정 2011.4.14]</p>	<p>제8조(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인수 신고) ①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의 수출 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물질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제8조(수출입물품 인도·인수 신고) 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과 영 제8조에 따라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인도(引渡) 또는 인수(引受)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서 또는 생물작용제등 인도(인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출입허가증 사본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보유량 등의 신고 <개정 2011.4.14.></p> <p>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① 특정 화학물질을 제조·가공하거나 소비하는 자(3종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해마다 그 계획과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특정화학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해마다 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대</p>	<p>② 법 제11조제2항 후단 및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1종화학물질 중 색시톡신(Saxitoxin)이 5밀리그램 이하인 물질로서 진단 또는 의료의 목적으로 인도·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2.></p> <p>제9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신고 대상, 신고기간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2.22.></p>	<p>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문개정 2012.4.13.></p> <p>제9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법 제13조에 따라 특정화학물질 또는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 등의 계획 및 실적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상의 구체적 범위 및 신고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1.4.14.]</p> <p>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①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량과 보유 경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보유기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p> <p>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는 자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현황을 질 	<p>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량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개정 2011.4.14.></p> <p>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와 화학무기금지협약의 검증부속서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는 시설(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일정한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사찰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협정을 체결한다. <개정 2013.3.23.></p> <p>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찰대상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p>	<p>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한 자</p> <p>3.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p> <p>③ 제1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한 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2.22.]</p>	<p>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③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려는 자는 그 변동량과 변동 사유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4.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리 사찰대상시설을 소유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사찰대상자”라 한다)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시설 명세서 및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p> <p>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① 외교부장관은 국제기구로부터 사찰실시계획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사찰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p> <p>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① 국제사찰단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사진 촬영과 시설 관계자의 진술 청취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설협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국제사찰단 소속 사찰관(이하 “사찰관”이라 한다)과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p> <p>① 주무관청은 국제사찰을 하는 전(全) 기간 동안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피사찰(被査察) 당사국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국제사찰에 대한 책임을 진다.</p> <p>②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의 시작 전이나 진행 중에 화학무기금지협약에 따른 국제사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설·설비 또는 비밀 자료나 그 밖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 과정에서 사찰관의 질문 내용이 통보된 사찰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사찰단장이 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거부하는 데에 필요한 해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④ 사찰대상자는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으며, 사찰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p> <p>제18조(행정감독) ① 주무관청은 이 법과 국제사찰, 그 밖에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찰대상시설에서 서류 및 장부의 검사, 시료의 채취 및 관계자의 진술 청취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사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p> <p>③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주무관청의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사찰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p>	<p>제10조(행정감독)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찰대상시설의 가동과 생산제품의 종류와 수량에 대한 조사 2. 원료물질의 종류별 구입 및 사용 실적에 대한 조사 3.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의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 4. 원료물질 및 생산제품에 대한 보전조치 5. 사찰대상시설의 생산공정 변경 및 개선·보수에 대한 조사 6. 그 밖에 법 또는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p>[전문개정 2012.2.22.]</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 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p>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 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 우수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p>④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제10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절차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물작용제등의 유출 또는 오염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생물작용제등의 취급시설의 노후 또는 파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경우 3. 생물작용제등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보안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생물작용제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p>	<p>제9조의3(정기검사증명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p> <p>[전문개정 2012.4.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6장 보칙 <개정 2011.4.14.></p> <p>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생물 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p>	<p>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p> <p>제10조의3(정기검사의 기간)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p> <p>제10조의4(정기검사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해의 정기검사 일시 전에 수시검사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2.22.]</p> <p>제10조의5(국립 연구시설)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4.14.]</p>	<p>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2. 그 밖에 국가기관에 소속된 국립 연구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전문개정 2012.2.22.]</p> <p>제11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의 범위) ① 법 제19조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립 연구시설에서 제조할 수 있는 1종화학물질 및 생물작용제등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방과학연구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톤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2. 그 밖의 국립 연구시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1종화학물질: 연간 10킬로그램 이하 나. 생물작용제등: 연간 1천밀리그램 이하 <p>② 법 제19조에 따라 국립 연구시설에서 1종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① 정부는 화학무기·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되는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이 인간 또는 동식물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제20조(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조에 대하여 미리 해당 국립 연구시설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p> <p>[전문개정 2012.2.22.]</p> <p>제11조의2(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2제2항에 따라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정보체계 구축 사업 2.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사업화 및 이에 필요한 기획·조사 사업 3. 그 밖에 대응 화학물질·생물물질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p>[전문개정 2012.2.22.]</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1조(장부의 비치 등) ① 허가제조사, 신고제조사와 제13조·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비치의무자”라 한다)는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수출입량 2.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 및 보유량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따른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치의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치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제3항에 따라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질문 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제12조(장부의 비치 등)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가공량·소비량 및 보유량 2.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제조량 및 보유량 3.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된 주요 원료물질의 월별 사용량 4.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 국내 인도량·인수량 및 인도자·인수자명 5.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월별·국가별 수출입량 6.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월별 제조량 <p>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장부 2. 법 제5장에 따른 국제사찰 및 행정감독에 관한 자료 <p>[전문개정 2012.2.22.]</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22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p> <p>제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관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무기·생물무기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화학산업 또는 생물</p>	<p>제12조의2(자료 제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부의 비치의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비치의무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10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2.]</p> <p>제13조 삭제 <1997.12.31.></p> <p>제1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산업 또는 생물산업 관련</p>	<p>제10조(업무의 위탁기관) 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란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1.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p> <p>2. 제13조에 따른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 신고의 접수</p> <p>3.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p> <p>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p> <p>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p> <p>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14.]</p>	<p>법인이나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p> <p>1. 법 제6조의3에 따른 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지원</p> <p>2. 법 제13조의2에 따른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 신고의 접수</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신고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신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2.22.]</p>	<p>한국바이오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4.13.]</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벌칙 <개정 2011.4.14.></p> <p>제25조(벌칙)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한 자는 무기(無期)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 화학무기·생물무기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녕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p> <p>[전문개정 2011.4.14.]</p> <p>제2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이나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한 자 2.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 화학물질을 제조한 자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3.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사찰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p> <p>4. 제2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자</p> <p>②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14.]</p> <p>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p> <p>1. 제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한 자</p> <p>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p> <p>3. 제11조제1항이나 제12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p> <p>4.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행정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전문개정 2011.4.14.]</p> <p>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에 처한다. <개정 2017.3.2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을 폐기한 자 4. 제11조제2항이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8조의2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유지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p>[전문개정 2011.4.14.]</p> <p>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같은 조</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p> <p>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p>②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p>	<p>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2011.4.5.]</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p> <p>부 칙 <제5162호, 1996.8.16.></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협약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100그램이상의 1종화학물질을 보유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보호목적시설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및 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된 제조계획을 실시하기 6월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p>	<p>부 칙 <제15373호, 1997.5.19.></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기존의 1종화학물질의 보유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3조제1항·제3항 및 제4항과 법 부칙 제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종류별로 각각 별표에서 정하는 수량을 말한다. ②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가공·소비 또는 수출입실적 등에 관한 신고를 하거나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 또는 그 변경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2항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신고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p>	<p>부 칙 <제58호, 1997.6.21.></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각종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및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등의 실적 및 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제조량등의실적(계획)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부칙 제3조제2항 및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물질의 제조계획의 변경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종화학물질 제조계획변경신고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부 칙 <제254호, 2005.2.2.>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3년의 기간중 어느 한 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2종화학물질을 제조·가공 또는 소비한 자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2종화학물질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조·가공 또는 소비실적이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신고하여야 한다.</p> <p>④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3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나 수출 또는 수입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제조계획에 따른 1종화학물질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4조(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바로 전 연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단일유기화학물질을 제조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0일이</p>	<p>은 단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부 칙 <제15598호, 1997.12.31.>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p> <p>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4조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1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p> <p><128>내지 <152>생략</p> <p>부 칙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p>	<p>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69호, 2006.10.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381호, 2006.12.29.></p> <p>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실적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5조(벌칙) 정당한 사유없이 부칙 제2조·제3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부 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생략</p> <p>부 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p> <p>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부 칙 <제7292호, 2004.12.31.> (유해화학물질관리법)</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36>생략 <237>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1호중 “과학기술처 소속 2·3급 공무원”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p> <p><238>내지 <241>생략</p> <p>부 칙 <제19799호, 2006.12.29.></p> <p>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9986호, 2007.4.4.> (대외무역법 시행령)</p> <p>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p>	<p>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제2조제4항, 제10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p> <p>제10조제1항 중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를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로 한다.</p> <p><63> 및 <64> 생략</p> <p>부 칙 <제246호, 2012.4.1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p> <p>⑦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유해성심사”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및 유해성심사”로 한다.</p> <p>⑧및 ⑨생략</p> <p>제12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7948호, 2006.4.28.></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생물작용제등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출 또는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p>	<p>③(다른 법령의 개정)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중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공고”를 “제21조의8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로 한다.</p> <p>부 칙 <제20257호, 2007.9.10.> (대외무역법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p> <p>⑨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7조 중 “제21조의8”을 “제26조”로 한다.</p> <p>제4조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p> <p><6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한다.</p> <p>제3조(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하는 자(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립연구시설을 제외한다)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물작용제등의 양(量)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p> <p>제4조(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5조(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2007년 2월 말일까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유량 전량(全量)을 자기가 제조하였을 것 2.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였을 것 <p>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2> 까지 생략</p> <p><83>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2항, 제4조제2항제2호,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제3항, 제10조의2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5조제2항·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p>	<p>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p> <p><62> 및 <63> 생략</p> <p>부 칙 <제583호, 2014.12.2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p> <p>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p> <p>⑰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제8356호, 2007.4.11.> (대외무역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p> <p>⑩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한다.</p>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3> 까지 생략</p> <p><41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p>	<p>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84> 부터 <86> 까지 생략</p> <p>부 칙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83> 까지 생략</p> <p><184>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p> <p><185> 부터 <187> 까지 생략</p> <p>부 칙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⑱부터 ⑳까지 생략</p> <p>제15조 생략</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 단서, 제6조의2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18조의2제1항·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농림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제30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p> <p><415> 부터 <760> 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9253호, 2008.12.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5> 까지 생략 <136>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p> <p>부 칙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p> <p>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㉑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으로 한다.</p> <p>제9조의2제2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제3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으로 한다.</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제9505호, 2009.3.18.></p> <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9932호, 2010.1.18.>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 및 제3조 생략</p> <p>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34> 까지 생략 <135>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4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p> <p><136> 및 <137> 생략</p> <p>제5조 생략</p> <p>부 칙 <제10592호, 2011.4.14.></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8조 생략</p> <p>부 칙 <제22863호, 2011.4.5.></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p> <p>부 칙 <제23627호, 2012.2.22.></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하는 특정화학물질 등의 신고부터 적용한다.</p> <p>부 칙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부 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p> <p>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p> <p>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1>까지 생략 <442>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5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30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 전단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전단,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 전단,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2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 같은</p>	<p>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p> <p>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제7조의2제3항제1호·제2호 및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30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 단서 및 제6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p> <p>제10조제4항 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443>부터 <710>까지 생략</p> <p>제7조 생략</p> <p>부 칙 <제11862호, 2013.6.4.> (화학물질관리법)</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p> <p>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p>	<p>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으로 한다.</p> <p><91> 및 <92> 생략</p>	

법 률	시 행 령	시 행 규 칙
<p>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p> <p>②부터 ㉔까지 생략</p> <p>제12조 생략</p> <p>부 칙 <제12317호, 2014.1.21.></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p>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별표**

특정 화학물질 (제2조제5호 관련)

1. 1종화학물질

가. 독성화학물질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 1) O-알킬(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예) 사린: O-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107-44-8)
소만: O-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96-64-0)
- 2) O-알킬(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예) 타분: O-에틸 N,N-디메틸 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77-81-6)
- 3) O-알킬(수소, 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S-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올레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또는 수소화 염
예) VX: O-에틸 S-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 포스포노티올레이트 (50782-69-9)
- 4) 설파 머스타드
2-클로로에틸클로로메틸설파이드 (2625-76-5)
머스타드가스: 비스(2-클로로에틸)설파이드 (505-60-2)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탄 (63869-13-6)
세스퀴머스타드: 1,2-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탄 (3563-36-8)
1,3-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프로판 (63905-10-2)
1,4-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부탄 (142868-93-7)
1,5-비스(2-클로로에틸티오)-노르말-펜탄 (142868-94-8)
비스(2-클로로에틸티오메틸)에테르 (63918-90-1)
O-머스타드: 비스(2-클로로에틸티오에틸)에테르 (63918-89-8)

5) 루이사이트

- 루이사이트1: 2-클로로비닐디클로로아르신 (541-25-3)
- 루이사이트2: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40334-69-8)
- 루이사이트3: 트리스(2-클로로비닐)아르신 (40334-70-1)

6) 나이트로젠 머스타드

- HN1: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538-07-8)
- HN2: 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51-75-2)
- HN3: 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555-77-1)

7) 색시톡신

(35523-89-8)

8) 리신

(9009-86-3)

나. 원료물질

1)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

- 예) DF: 메틸포스포닐디플루오라이드 (676-99-3)

2) O-알킬(수소, 탄소수는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O-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나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혹은 수소화 염

- 예) QL: O-에틸 O-2-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57856-11-8)

3) 클로로사린: O-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1445-76-7)

4) 클로로소만: O-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7040-57-5)

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 중 목록 1에 포함되어야 할 화학물질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2. 2종화학물질

가. 독성화학물질

1) 아미톤: O,O-디에틸 S-[2-(디에틸아미노)에틸] 포스포로티올레이트와 그에 상응하는 알킬화 또는 수소화 염

(78-53-5)

2) PFIB: 1,1,3,3,3-펜타플루오르-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382-21-8)

3) BZ: 3-퀴누클리디닐 벤질레이트(*)

(6581-06-2)

*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이행과 검증에 관한 부속서」 제7부에 규정된 신고 및 검증을 위한 특별한 기준치의 적용을 받는다.

나. 원료물질

- 1) 하나의 메틸, 에틸 혹은 프로필(노르말 또는 이소)그룹이 결합되어 있는 인원자(磷原子)를 포함한 화학물질 중 1중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
 - 예) 메틸포스포닐 디클로라이드 (676-97-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756-79-6)
 - (예외) 포노포스: O-에틸 S-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네이트 (944-22-9)
- 2)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 3)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 4) 아르세닉 트리클로라이드 (7784-34-1)
- 5)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 (76-93-7)
- 6) 퀴뉴클리딘-3-올 (1619-34-7)
- 7)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틸-2-클로라이드와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 8)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올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 (예외) N,N-디메틸아미노에탄올(108-01-0)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 N,N-디에틸아미노에탄올(100-37-8)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 9) N,N-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그에 상응하는 수소화 염
- 10) 티오디글리콜: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설파이드 (111-48-8)
- 11) 피나콜릴 알코올: 3,3-디메틸부탄-2-올 (464-07-3)

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 중 목록 2에 포함되어야 할 화학물질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3. 3중화학물질

가. 독성화학물질

- 1) 포스젠: 카보닐 디클로라이드 (75-44-5)
- 2)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506-77-4)
- 3) 하이드로젠 시아나이드 (74-90-8)

- 4) 클로로피크린: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76-06-2)
- 나. 원료물질
 - 1)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10025-87-3)
 - 2)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7719-12-2)
 - 3)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10026-13-8)
 - 4)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121-45-9)
 - 5)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122-52-1)
 - 6) 디메틸 포스파이트 (868-85-9)
 - 7) 디에틸 포스파이트 (762-04-9)
 - 8)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10025-67-9)
 - 9) 설퍼 디클로라이드 (10545-99-0)
 - 10) 티오닐 클로라이드 (7719-09-7)
 - 11) 에틸디에탄올아민 (139-87-7)
 - 12) 메틸디에탄올아민 (105-59-9)
 - 13) 트리에탄올아민 (102-71-6)

다. 화학무기금지협약의 「화학물질에 관한 부속서」 중 목록 3에 포함되어야 할 화학물질의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생물작용제 (제2조제3항 관련)

1. 다음 표에 해당하는 인체·인수(人獸) 병원균

구분	인체·인수 병원균
바이러스	가.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바이러스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virus) 나. 동부 마 뇌염 바이러스(Eastern equine encephalitis virus) 다.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라. 라사열 바이러스(Lassa fever virus) 마. 마버그 바이러스(Marburg virus) 바. 원숭이 폭스 바이러스(Monkey pox virus) 사. 리프트계곡열 바이러스(Rift Valley fever virus) 아. 참진드기 매개뇌염 바이러스(Tick-borne encephalitis virus(Russian Spring-Summer encephalitis, Kyasanur Forest, Omsk Hemorrhagic Fever)) 자. 두창 바이러스(Variola virus) 차. 베네수엘라 마 뇌염 바이러스(Venezuelan equine encephalitis virus) 카. 헨드라 바이러스[Hendra virus(Equine morbillivirus)] 타. 남아메리카 출혈열 바이러스[South American haemorrhagic fever(Sabia, Flexal, Guanarito, Junin, Machupo)] 파. 니파 바이러스(Nipah virus) 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거.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 너. 우해면양 뇌병증 병원체(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agent)
미생물	가. 탄저균(Bacillus anthracis) 나. 양 브루셀라균(Brucella melitensis) 다. 보툴리눔균(Clostridium botulinum)

구분	인체·인수 병원균
	라. 야토균(<i>Francisella tularensis</i>) 마. 비저균(<i>Burkholderia mallei</i>) 바. 콜레라균(<i>Vibrio cholerae</i>) 사. 페스트균(<i>Yersinia pestis</i>) 아. 멜리오이도시스균(<i>Burkholderia pseudomallei</i>) 자. 큐열균(<i>Coxiella burnetii</i>) 차. 발진티푸스균(<i>Rickettsia prowazekii</i>) 카. 홍반열 리케치아균(<i>Rickettsia rickettsii</i>)

2. 다음 표에 해당하는 동물병원균

구분	동물병원균
바이러스	가. 아프리카돼지열 바이러스(<i>African swine fever virus</i>) 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Avian influenza virus(Highly pathogenic)</i>] 다. 청설병 바이러스(<i>Bluetongue virus</i>) 라. 구제역 바이러스(<i>Foot and mouth disease virus</i>) 마. 산양두 바이러스(<i>Goat pox virus</i>) 바. 리사 바이러스(<i>Lyssa virus</i>) 사. 소 반추 수역 바이러스(<i>Peste des petits ruminants virus</i>) 아. 돼지 수포병 바이러스(<i>Swine vesicular disease virus</i>) 자. 우역 바이러스(<i>Rinderpest virus</i>) 차. 양두 바이러스(<i>Sheep pox virus</i>) 카. 수포성구내염 바이러스(<i>Vesicular stomatitis virus</i>) 타. 피부사상균 바이러스(<i>Lumpy skin disease virus</i>) 파. 아프리카마역 바이러스(<i>African horse sickness virus</i>)
미생물	우폐역(<i>Mycoplasma mycoides</i>)

3. 다음 표에 해당하는 식물병원균

구분	식물병원균
바이러스	가. 감자구균(Potato Andean latent tymovirus) 나. 감자갈쪽병 바이로이드(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미생물	가. 구름무늬병균(Xanthomonas albilineans) 나. 감귤궤양병(Xanthomonas campestris pv. citri) 다. 벼흰잎마름병균(Xanthomonas campestris pv. oryzae) 라. 감자둘레썩음병균(Clavibacter michiganese subsp. sepedonicum) 마. 풋마름병원균(Ralstonia solanacearum) 바. 커피탄저병균(Colletotrichum coffeanum var. virulans) 사. 깨씨무늬병균[Cochliobolus miyabeanus(Helminthosporium oryzae)] 아. Myrocyclus ulei(syn. Dothidelia ulei) 자. 줄기녹병균[Puccinia graminis(syn. Puccinia graminis f. sp. tritici)] 차. 줄녹병균[Puccinia striiformis(syn. Puccinia glumarum)] 카. 도열병균(Pyricularia grisea / Pyricularia oryzae)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2.2.22>

독 소 (제2조제4항 관련)

1.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2.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3. 코노 독소(Conotoxin)
4. 시가 독소(Shiga toxin)
5. 포도상구균 장 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6. 복어독(Tetrodotoxin)
7. 베로톡신(Verotoxin)
8.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9. 아플라톡신(Aflatoxins)
10. 아브린(Abrin)
11. Diacetoxyscirpenol toxin
12. T-2 toxin
13. 볼켄신 독소(Volkensin toxin)

화학물질별 신고 대상 등 (제9조 관련)

신고 대상 물질		활동	농도	신고 대상 수량	신고 내용	신고기간
1종화학물질					○제조·가공 및 소비: 전년도 실적 및 다음 해 계획 ○수출입: 전년도 실적	○실적: 매년 2월 15일까지 ○계획: 매년 9월 15일까지
2종화학 물질	BZ	제조·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0킬로그램 이상		
			10% 초과	1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0그램 이상		
	아미톤 · PFIB	제조·가공 및 소비	1% 초과 10% 이하	1톤 이상		
			1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수출입	1% 초과	10킬로그램 이상		
원료물질	제조·가공 및 소비	30% 초과	1톤 이상			
	수출입	30% 초과	100킬로그램 이상			
3종화학물질		제조	30% 초과	30톤 이상		
		수출입	30% 초과	3톤 이상		
단일유기 화학물질	인·황 또는 불소를 함유한 유기화학물질	제조		30톤 이상	○제조: 전년도 실적	
	그 밖의 유기화학물질	제조		200톤 이상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2.2.22>

신고가 면제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 (제9조의2제1항 단서 관련)

1. 0.5밀리그램 미만의 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2. 100밀리그램 미만의 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3. 100밀리그램 미만의 코노 독소(Conotoxin)
4. 100밀리그램 미만의 시가 독소(Shiga toxin)
5. 100밀리그램 미만의 포도상구균 장 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6. 100밀리그램 미만의 복어독(Tetrodotoxin)
7. 100밀리그램 미만의 베로톡신(Verotoxin)
8. 100밀리그램 미만의 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9. 100밀리그램 미만의 아플라톡신(Aflatoxins)
10. 100밀리그램 미만의 아브린(Abrin)
11. 1천밀리그램 미만의 Diacetoxyscirpenol toxin
12. 1천밀리그램 미만의 T-2 toxin
13. 100밀리그램 미만의 볼켄신 독소(Volkensin toxin)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외교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 1) 법령을 위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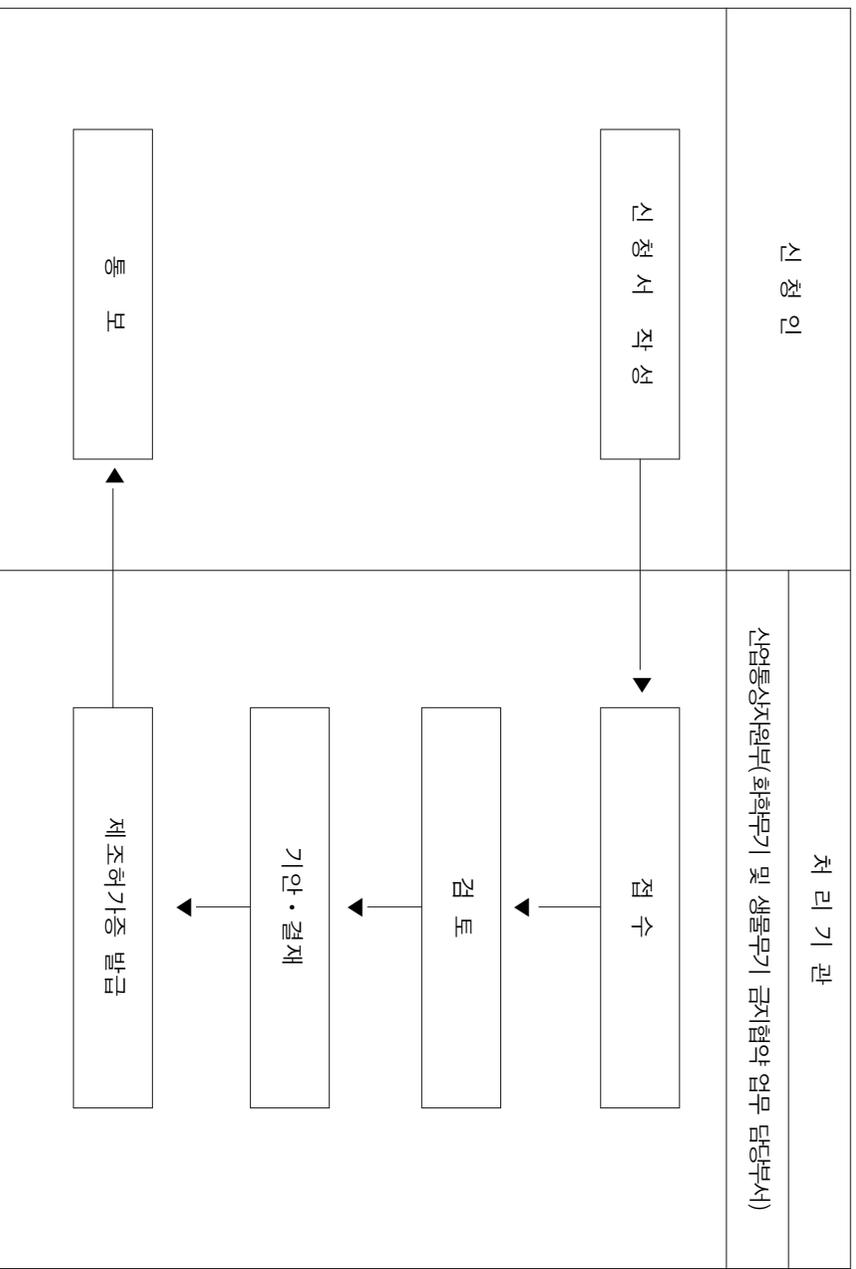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500
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의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500
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계 시설 명세서와 설계도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3호	500
라.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답변을 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	250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서식**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생물작용제 등 제조신고서

※ 마탕색이 어두운 단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상호(명칭)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물질 명칭	
제조 수량	
제조 소재지	전화번호
제조 시작일	
제조 종료일	
제조 목적	
폐기방법	
저장 장소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업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1부 3. 사업장 내의 제조설비 및 그 밖의 시설의 위치를 나타내는 도면 1부 4. 생물작용제등의 제조 기구·기계 또는 장치에 대한 설명서 1부 5. 생물작용제등의 보관방법 설명서 1부 	수수로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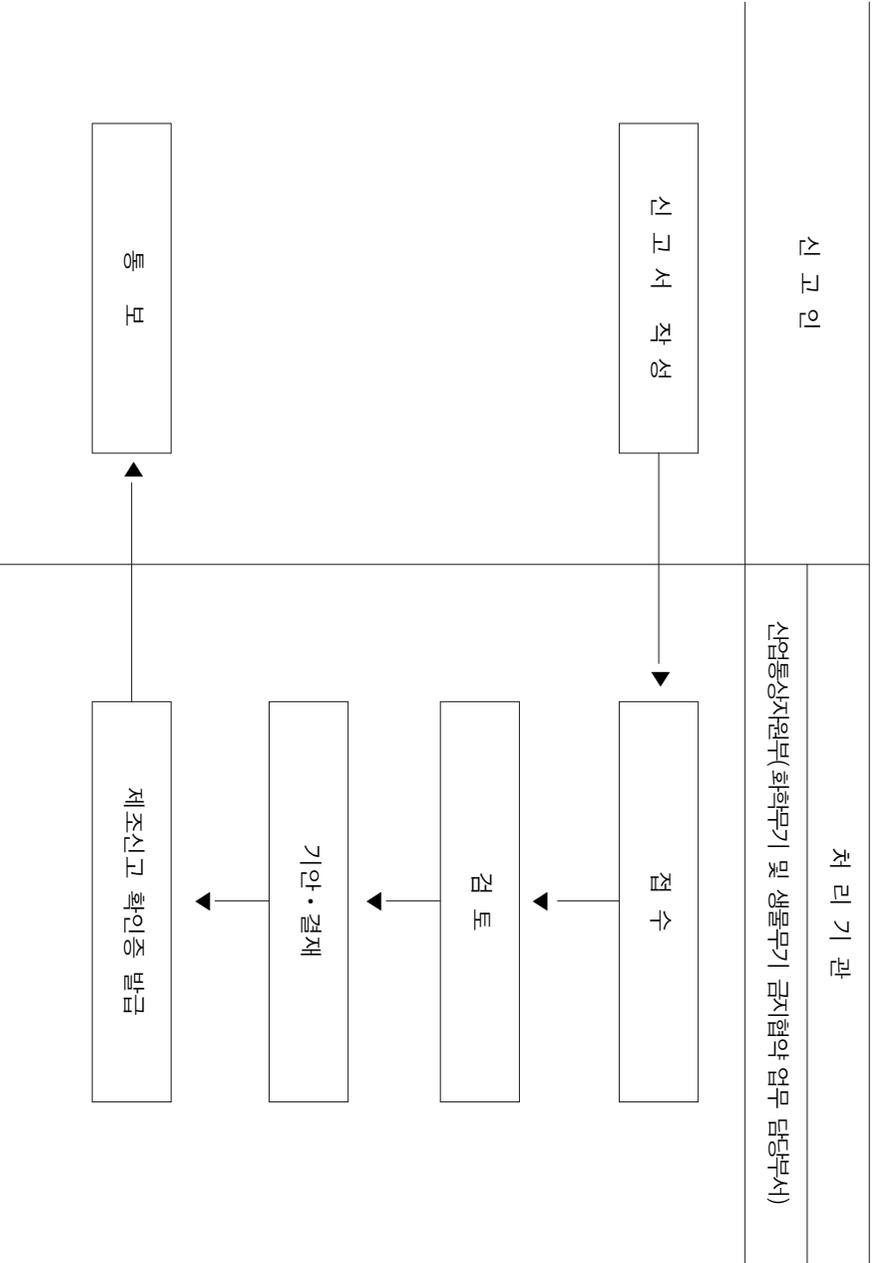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8>

생물작용제등 제조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	--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제조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생물작용제등 제조신고 확인증 1부 2.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처리기간: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3.28>

보안관리계획 지원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제조소재지

신고번호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 등의 보안관리계획에 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원증명서(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제조신고 확인증 1부 3.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에 관한 경영책임자의 확인서(確認書) 1부 4. 보안관리계획 실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원 여부 결정

신청인

처리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 3. 23>

[1종 화학물질 [1] 생물작용제 등 제조 폐지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상호(명칭)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허가번호(신고번호)

물질 명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폐지 수량

제조 소재지

제조 폐지일

제조 폐지 사유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폐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종화학물질 제조허가증 1부 또는 생물작용제 등 제조신고 확인증 1부 2. 1종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 수량 및 그 처분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제조 폐지신고인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수리
--------	---	----	---	----	---	------	---	----

신고인

처리기간: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3.3.23>

1종 화학물질 양도승인 신청서

※ 마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양도 물질	주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양도 수량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 사유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 양도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수인이 허가제 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양도승인서 발급
--------	---	----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1종 화학물질 양도승인서

- 양도인
상 호: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수인
상 호: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도 물질: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 양도 수량:
- 양도 사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1종화학물질의 양도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3.3.23>

생물작용제 등 양도신고서

※ 마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양도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양도 물질

양도 수량

양도 사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양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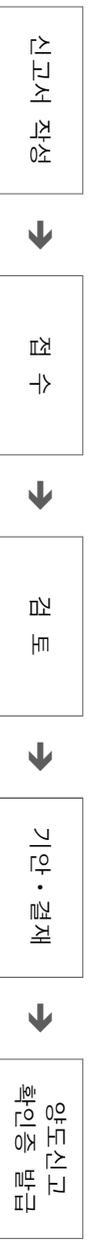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양수인이 신고제조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생물작용제 등 양도신고 확인증

- 양도인
상 호: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수인
상 호: ()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양도 물질: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 양도 수량:
- 양도 사유: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생물작용제 등의 양도신고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종 화학물질 [1생물작용제 등 폐기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상호(명칭)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폐기물질 명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폐기 수량

폐기 일시

폐기 장소

폐기 사유

폐기방법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폐기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폐기신고인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기안·결재	➔	수리
처리기간: 산업통상자원부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 금지협약 업무 담당부서								

[1종 화학물질 [수입허가] 생물작용제 등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무역업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물질 명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수입국가	
	상호(명칭)	
	수입량	수입기간
	수입 사유	

변경 내용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입계약서 또는 수입발주서 1부 2.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1부 3. 수입허가서(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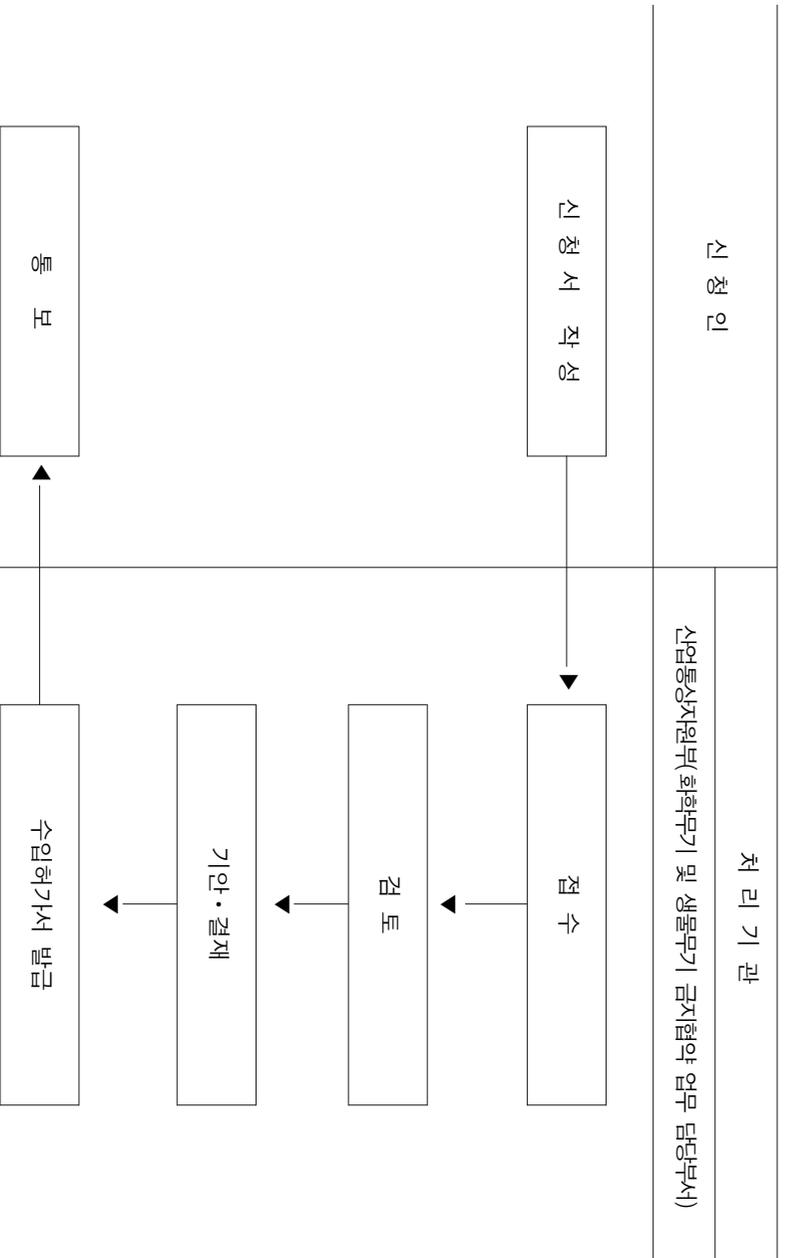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유의사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 화학물질 수입하기(변경하기) 신청인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종 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1. 상 호: ()
2.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전화번호:)
4. 물질 명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5. 품목분류번호(HSK No.):
6. 수입국가:
7. 수입기간: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등)의 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1종 화학물질 [1] 생물작용제 등 인도(인수)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고내용	[] 인도 [] 인수	물질 명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
		품목분류번호(HSK No.)	
		수출입 대상국	수출입 대상자
		수량	인도·인수 장소
		인도·인수일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1종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인도(인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허가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출입허가증 사본 1부 2.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또는 수출입물품 인도·인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CAS No. (화학색인정보등록번호)는 1종화학물질 인도(인수) 신고인만 적습니다.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3.3.23>

[]실적 []계획 제조량 등의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 시
------	-----	------	-----

신고인	주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상호(명칭)</td> <td style="width: 50%;">성명(대표자)</td> </tr> <tr> <td style="width: 50%;"> </td> <td style="width: 50%;">주소</td> </tr> </table>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사업자등록번호</td> <td style="width: 50%;">전화번호</td> </tr> <tr> <td style="width: 50%;"> </td> <td style="width: 50%;"> </td> </tr> </table>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연 도

신고 대상 물질	신고량(단위:)				잔여량	비고	
종별	물질명칭	제조	가공	소비	수출	수입	보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량 등의 실적(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특정화학물질 및 단일유기화학물질의 제조량등의 실적(계획)신고서 첨부서류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7-109호)	없 음

210mm X 297mm(백상지 80g/m²)

■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3.3.28>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서

※ 마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없음
상호(명칭) 신고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연 도

신고 대상 물질	신고량(단위:)	수입	기타
종류	물질 명칭	제조	

보유기간

보유경위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보유 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보유량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로 없음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기검사증명서

1. 상 호: _____
2. 대 표 자: _____ (사업자등록번호: _____)
3. 주 소: _____ (전화번호: _____)
4. 검사일: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5. 유효기간: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화학무기 ·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에 따라 정기검사증명서를 발급합니다.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인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개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개요

1. 협약 체결 및 국제협상 경과

가. 협약 명칭

-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 약칭 ‘생물무기금지협약’
-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나. 협약체결 경과

- 일 자 : 1972년 4월 10일
- 발효일 : 1975년 3월 26일
- 가입국 : 182개국(2018. 11. 현재)

다. 우리나라 관련사항

- 서명일 : 1972년 4월 10일
- 비준서 기탁일 : 1987년 6월 25일
- 발효일(가입일) : 1987년 6월 25일(조약 제925호)
-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법 제정·공포 : 2006년 4월 28일(법률 제7948호)
-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법 시행령 제정·공포 : 2006년 12월 29일(대통령령 제19799호)
- 생물무기금지협약 국내이행법 시행규칙 제정·공포 : 2006년 12월 29일(산업자원부령 제381호)

라. 국제협상 경과

- 1971. 12 : 생물무기금지협약 UN 채택
- 1972. 4 : 생물무기금지협약 체결
- 1975. 3 : 생물무기금지협약 발효
- 1980. 3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1차 평가회의
- 1986. 9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2차 평가회의
- 1991. 9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3차 평가회의
- 1994. 9 : 생물무기금지협약 특별총회
- 1995. 1~2001. 7 : 생물무기금지협약 특별그룹회의(총 24회, 중단)
- 1996. 11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4차 평가회의
- 2001. 11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5차 평가회의(중단)
- 2002. 11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5차 평가회의 속개회의
- 2003. 8/11 : 2003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04. 7/12 : 2004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05. 6/12 : 2005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06. 11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6차 평가회의
- 2007. 8/12 : 2007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08. 8/12 : 2008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09. 8/12 : 2009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10. 8/12 : 2010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11. 4/12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7차 평가회의 준비회의/평가회의
- 2012. 7/12 : 2012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13. 8/12 : 2013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14. 8/12 : 2014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15. 8/12 : 2015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 2016. 4/8/11 : 생물무기금지협약 제8차 평가회의 1차 준비회의/2차 준비회의/평가회의
- 2017. 12 : 2017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당사국회의
- 2018. 8/12 : 2018년도 생물무기금지협약 전문가회의/당사국회의

2. 협약 구성 및 내용

가. 협약 구성

- 제1조 : 평화목적 이외의 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보유 등의 금지
- 제2조 : 생물무기의 평화적 목적으로의 전환 또는 폐기
- 제3조 : 생물무기의 이전, 원조, 장려, 권유의 금지
- 제4조 : 협약준수를 위한 국내이행조치의 실시
- 제5조 : 문제해결을 위한 당사국간의 협력
- 제6조 : 타국의 협약위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불만 제기 권리
- 제7조 : 협약위반으로 인해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당사국에 대한 원조 및 지원
- 제8조 : 1925년 제네바 의정서의 준수 의무
- 제9조 : 화학무기의 금지 및 폐기를 위한 협상 계속
- 제10조 : 평화목적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 국제협력
- 제11조 : 협약의 개정요건
- 제12조 : 평가회의 개최
- 제13조 : 유효기한(무기한) 및 탈퇴절차
- 제14조 : 서명, 비준, 발효 등
- 제15조 : 정보

나. 협약 조문내용

(1) 금지규정

- 협약의 당사국은 제1조 (1) 및 (2)에 규정하는 물질을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유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제1조), 폐기 또는 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의무(제2조),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 등(제3조)을 협약하고, 제1조에 규정된 물질의 개발, 생산, 저장, 취득, 보존을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2) 협약준수에 관한 국제법적 절차

- 당사국간의 협의협력(제5조), 안보리 제소 및 안보리의 조사(제6조), 협약 당사국에 대한 원조(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다른 국제협약과의 관계

- 생물무기금지협약은 제네바 의정서에 기초하여 각국의 의무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며(제8조), 화학무기금지협약의 조기 실현을 위한 교섭은 계속한다(제9조).

(4) 기타 최종조항

- 평화목적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의 교환, 국제협력(제10조), 협약의 개정(제11조), 검토회의(제12조), 무기한 협약 유효기간(제13조), 협약의 서명·가입·비준·발효(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전문(국·영문)**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Bacteriological(Biological) and Toxin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이 협약의 당사국은,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모든 형태의 대량파괴 무기의 금지와 제거를 포함하여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지향하기 위한 효과적인 진보를 이룩하기 위하여 행동 할 것을 결의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한 화학 및 세균무기(생물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동 무기의 제거가 엄격하고 실효적인 국제 감시 하에서는 전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의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는 확신을 가지며,

Determine to act with a view to achieving effective progress toward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including the prohibition and elimination of all types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convinced that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chemical and bacteriological (biological) weapons and their elimination, through effective measures, will facilitate the achievement of general and complete disarmament under strict and effective control,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와 세균학 전투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울러 동 의정서가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전쟁의 공포를 경감하는데 공헌한 점을 인식하며,

Recognizing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signed at Geneva on June 17, 1925, and conscious also of the contribution which the said Protocol has already made and continues to make, to mitigating the horrors of war,

동 의정서의 원칙과 목적을 고수할 것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가 이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며,

Reaffirming their adherence to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at Protocol and calling upon all States to comply strictly with them,

국제연합 총회가 계속하여 1925년 6월 17일자 제네바 의정서의 원칙과 목적에 반하는 모든 행동을 비난하여 온 점을 상기하며,

Recalling that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has repeatedly condemned all actions contrary to the principles and objectives of the Geneva Protocol of June 17, 1925,

제 국민간의 신뢰를 돈독히 하고 국제적인 분위기의 일반적 개선에 공헌할 것을 희망하며,

Desiring to contribute to the strengthening of confidence between peoples and the general improvement of the international atmosphere,

아울러 국제연합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실현시키는 데 공헌할 것을 희망하며,

Desiring also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효과적인 조치를 통하여 화학물질이나 세균성(생물성) 물체의 사용과 같은 대량파괴용 위험무기를 각 국가의 무기고에서 제거함이 중대하고 시급함을 확신하며,

Convinced of the importance and urgency of eliminating from the arsenals of States, through effective measures, such dangerou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s those using chemical or bacteriological (biological) agents,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금지에 관한 협정이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의 금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에 관하여 합의를 성취하기 위한 가능한 첫 단계를 의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협의를 계속할 것을 결의하며,

Recognizing that an agreement on the prohibition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nd toxin weapons represents a first possible step towards the achievement of agreement on effective measures also for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of chemical weapons, and determined to continue negotiations to that end,

인류 전체를 위하여, 세균성(생물성) 물체와 독소물질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것을 결의하며,

Determined, for the sake of all mankind, to exclude completely the possibility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being used as weapons,

그러한 사용이 인류의 양심에 반하기 때문에 그 사용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Convinced that such use would be repugnant to the conscience of mankind and that no effort should be spared to minimize this risk,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Have agreed as follows:

제 1조(ARTICLE I)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래 물체를 개발, 생산, 비축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never in any circumstance to develop, produce, stockpile or otherwise acquire or retain:

- (1) 원천이나 생산방식이 어떠한지 형태나 양으로 보아 질병예방, 보호 또는 기타 평화적 목적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미생물, 기타 세균 또는 독소
(1) Microbial or other biological agents, or toxins whatever their origin or method of production, of types and in quantities that have no justification for prophylactic, protective or other peaceful purposes;
- (2) 적대목적이나 무력충돌시 전기의 물체나 독소를 사용하기 위하여 고안된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
(2) Weapons, equipment or means of delivery designed to use such agents or toxins for hostile purposes or in armed conflict.

제 2조(ARTICLE II)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늦어도 이 협약의 발효 후 9개월 이내에 자국이 소유, 관할 또는 통제하고 있으며 이 협약 제1조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으로 전환시킨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destroy, or to divert to peaceful purposes, as soon as possible but not later than nine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all agents, toxins, weapons, equipment and means of delivery specified in article I of the Convention, which are in its possession or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본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안전예방조치를 취한다.

In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ll necessary safety precautions shall be observed to protect populations and the environment.

제 3조(ARTICLE III)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제1조에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또는 수송수단을 수령대상자 여하를 막론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양도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특정국가, 국가군 또는 국제기구가 그것을 제조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획득하는 것을 원조, 고무 또는 권유하지 아니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not to transfer to any recipient whatsoever, directly or indirectly, and not in any way to assist, encourage, or induce any State, group of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manufacture or otherwise acquire any of the agents, toxins, weapons, equipment or means of delivery specified in article I of the Convention.

제 4조(ARTICLE IV)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각 국가의 헌법절차에 따라서 그 국가의 영역 내에서도나 그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1조에서 열거한 물체, 독소, 무기, 설비 및 수송수단을 개발, 생산, 비축, 획득 또는 보유하는 것을 금지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take any necessary measures to prohibit and prevent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cquisition or retention of the agents, toxins, weapons, equipment and means of delivery specified in article I of the Convention, within the territory of such State, under its jurisdiction or under its control anywhere.

제 5조(ARTICLE V)

이 협약의 당사국은 이 협약의 목적과 관련하여 또는 이 협약의 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호간 협의하고 협력한다.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consult one another and to cooperate in solving any problems which may arise in relation to the objective of, or in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본 조에 따른 협의와 협력은 국제연합의 테두리 내에서 헌장에 따라 적절한 국제절차를 통하여 행하여질 수 있다.

Consultation and cooperation pursuant to this article may also be undertaken through appropriate international procedur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ited Nations and in accordance with its Charter.

제 6조(ARTICLE VI)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의무를 위반하여 행동함을 발견한 때에는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를 제소할 수 있다. 동 제소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고려의 요청은 물론 그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모든 가능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1) Any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which finds that any other State Party is acting in breach of obligations deriving from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may lodge a complaint with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Such a complaint should include all possible evidence confirming its validity, as well as a request for its consideration by the Security Council.

(2)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 이사회에 접수된 제소를 기초로 국제연합헌장의 제 규정에 따라서 개시하는 어떠한 조사에 있어서도 협조한다.

(2)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cooperate in carrying out any investigation which the Security Council may initi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on the basis of the complaint received by the Council.

안전보장이사회는 이 협약의 각 당사국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The Security Council shall inform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f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제 7조(ARTICLE VII)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안전보장이사회가 협약 위반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이 위협에 당면하였다고 결정할 경우, 도움을 요청한 그 당사국에게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원조를 제공하거나 지원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undertakes to provide or support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harter, to any Party to the Convention which so requests, if the Security Council decides that such Party has been exposed to danger as a result of violation of the Convention.

제 8조(ARTICLE VIII)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1925년 6월 17일 제네바에서 서명된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와 세균학적 전투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의정서의 당사국에게 부과된 제 의무를 여하한 방법으로도 제한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interpreted as in any way limiting or detracting from the obligations assumed by any State under the Protocol for the Prohibition of the Use in War of Asphyxiating, Poisonous or Other Gases, and of Bacteriological Methods of Warfare, signed at Geneva on June 17, 1925.

제 9조(ARTICLE IX)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화학무기의 효과적인 금지라는 목적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의 금지와 동 무기의 폐기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고안된 장비와 수송수단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는 목표로 성실하게 협상을 계속한다.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affirms the recognized objective of effectiv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to this end, undertakes to continue negotiations in good faith with a view to reaching early agreement on effective measures for the prohibition of their development, production and stockpiling and for their destruction, and on appropriate measures concerning equipment and means of delivery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roduction or use of chemical agents for weapons purposes.

제 10조(ARTICLE X)

(1) 이 협약의 당사국은 세균성(생물성) 물체와 독소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설비, 물자 및 과학적, 기술적 정보를 최대한으로 교환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교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있는 협약당사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국가나 국제조직과 공동으로 질병의 예방이나 다른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세균학(생물학)분야에 있어서 과학적 발견의 새로운 개발과 응용에 기여하는데 있어서 협력한다.

(1) The States Parties to this Convention undertake to facilitate, and have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fullest possible exchange of equipment, material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for the use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for peaceful purposes. Parties to the Convention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also cooperate in contributing individually or together with other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the furthe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cientific discoveries in the field of bacteriology (biology) for prevention of disease, or for other peaceful purposes.

- (2) 이 협약은 세균성(생물성) 물체 및 독소가 본 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서 평화적 목적으로 처리, 사용, 생산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교환되는 것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당사국이 평화적 목적의 세균(생물)연구활동 분야에 있어서 경제적, 기술적으로 발전하거나 국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행된다.
- (2) This Convention shall be implemented in a manner designed to avoid hampering the economic or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peaceful bacteriological (b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xchange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nd equipment for the processing, use or production of bacteriological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for peaceful purpos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제 11조(ARTICLE XI)

여하한 당사국도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은 그 개정을 수락한 국가에 대하여는 협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수락을 할 때 발효하며 나머지 당사국에 대하여는 그 후의 수락일자로부터 발효한다.

Any State Party may propose amendments to this Convention. Amendments shall enter into force for each State Party accepting the amendments upon their acceptance by a majority of the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hereafter for each remaining State Party on the date of acceptance by it.

제 12조(ARTICLE XII)

이 협약의 발효 후 5년 또는 이 협약당사국의 과반수가 수탁정부에 요청할 경우에는 그 이전에, 화학무기의 협상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전문의 목적과 협약의 제 규정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증할 목적으로 협약의 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당사국 회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Five year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or earlier if it is requested by a majority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by submitting a proposal to this effect to the Depositary Governments, a conference of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shall be held at Geneva, Switzerland, to review the operation of the Convention, with a view to assuring that the purposes of the preamble and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including the provisions concerning negotiations on chemical weapons, are being realized. Such review shall take into account any new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relevant to the Convention.

제 13조(ARTICLE XIII)

(1) 이 협약은 무기한 존속한다.

(1) This Convention shall be of unlimited duration.

(2) 이 협약의 각 당사국은 이 협약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주권의 행사로서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권리를 가진다. 그 국가는 그러한 탈퇴를 이 협약의 모든 당사국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3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에는 그 국가가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별한 사건에 관한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 Each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in exercising its natural sovereignty have the right to withdraw from the Convention if it decides that extraordinary events, related to the subject matter of the Convention,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It shall give notice of such withdrawal to all other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nd to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three months in advance. Such notice shall include a statement of the extraordinary events it regards as having jeopardized its supreme interests.

제 14조(ARTICLE XIV)

(1)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게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이 조 제3항에 의한 협약의 발효 전에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는 언제든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to all States for signature. Any State which does not sign the Convention before its entry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this Article may accede to it at any time.

(2) 이 협약은 서명국가에 의한 비준을 요건으로 한다. 비준서와 가입서는 이 협약에서 수탁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 정부, 대영연합왕국 정부 및 소비에트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정부에 기탁된다.

(2) This Convention shall be subject to ratification by signatory States.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nstruments of access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Governmen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hich are hereby designated the Depositary Governments.

- (3) 이 협약은 협약의 수탁처로 지정된 정부를 포함하여 22개국 정부에 의하여 비준서가 기탁된 후에 발효한다.
- (3) This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after the deposit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by twenty-two Governments, including the Governments designated as Depositaries of the Convention.
- (4) 이 협약의 발효 후에 비준서나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대하여는 그들의 비준서나 가입서의 기탁일자로부터 발효한다.
- (4) For States whos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e deposited subsequent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i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the deposit of their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 (5) 수탁정부는 서명일자,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협약의 발효일자 및 기타 통고의 접수일자를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 정부에 신속히 통보한다.
- (5) The Depositary Governments shall promptly inform all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 of the date of each signature, the date of deposit of eac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of accession and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and of the receipt of other notices.
- (6)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에 따라 수탁정부에 의하여 등록된다.
- (6) This Convention shall be register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pursuant to Article 102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제 15조(ARTICLE XV)

영어본, 러시아어본, 불어본, 서반아어본 및 중국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은 수탁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된다. 이 협약의 인증등본은 수탁정부에 의하여 서명국과 가입국의 정부에 전달된다.

This Convention, the English, Russian, French, Spanish and Chinese texts of which are equally authentic, shall be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Depositary Governments. Duly certified copies of the Convention shall be transmitted by the Depositary Governments of the signatory and acceding States.